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어 장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 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나. 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어장청소 주기(3~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라. 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존 면허와 종류, 방법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2의2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

제금은 면허면적 0.1ha 당 5만원으로 산정하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6.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을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어장청소 등) ① (생 략)	제12조(어장청소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 업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당 어장에서 기 존 면허와 종류, 방법 등을 동일 하게 유지하면서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별표 1의 주기와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를 할 수 있다.</u>
<u>② · ③ (생 략)</u>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신 설></u>	<u>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 12조제4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를 위 한 사전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이행기간 동안 필요</u>

<신 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5.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및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2의2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면허면적 0.1ha 당 5만원으로 산정하며, 1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6.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 제>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어장환경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를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생략)

3.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어장환경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

-----.

② 법 제33조제2항-----

-----.

1. 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623